

#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특허청, 2013년 12월, 제정

특허청, 2022년 7월, 개정

## I.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하 “주최자”라 한다)이 공모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당한 보상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전 운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아이디어 공모전 예시 >

◇ 창업아이템·신제품·앱·디자인 공모전, 발명대회 등 지식재산<sup>1)</sup>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활용하기 위한 각종 대회·행사·프로그램

## II. 적용범위

- (1)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모두 적용된다.
- (2) 이 가이드라인은 공모전 운영, 아이디어의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한다. 따라서 주최자는 공모전 요강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3)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 근거 >**

- ◇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2조 제2호).
  - ◇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19조).
  -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모전 요강은 주최자가 여러 명의 아이디어 제안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해당할 수 있음

### Ⅲ. 주최자의 준수사항

#### 1.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

- (1) 주최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 도용,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의 종류와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사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2) 주최자는 아이디어 표절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야 하며, 그 검증방법은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만일 온라인 등으로 아이디어를 공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이하 “공개검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3)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아래의 ‘검증방법’을 준수하되, 공모전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검증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검증방법 예시

- √ 구글·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사이언스온(scienceon.kisti.re.kr) 및 해피캠퍼스(www.happycampus.com) 등을 통해 동일 아이디어, 논문 등의 유무 확인
  - √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KIPRIS(www.kipris.or.kr) 내 검색을 통해 동일 아이디어, 논문, 지식재산권 등의 유무 확인
  - √ 동일 아이디어, 논문 및 지식재산권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건의 권리자 및 공개일시를 확인하여 권리자가 응모자 본인이 아니면서 본 공모전의 응모일보다 먼저 공개된 경우, 응모된 아이디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
- ※ 공모전 성격에 따라 응모자 본인의 아이디어라도 이미 공개된 것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4) 주최자는 공모전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sup>2)</sup> 등의 관련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 2.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

- 2)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요건 등을 판단하기 위해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란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특허청에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1)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귀속된다.

\* (참고사례) 「특허법」 제33조제1항에서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 공모전 요강 예시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다.

#### 공모전 요강 부적절 사례

✓ 제출된 아이디어 모든 권리는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있다.

✓ 응모작의 모든 권리는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있다.

✓ 제출된 결과물의 모든 권한은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있다.

✓ 출품작의 지식재산권 및 일체의 권리는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있다.

(2) 주최자의 책임 하에 다수가 참여하여 응모된 아이디어를 개선·발전시키는 공모전인 경우에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 주최자 및 기타 참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소유자 등으로 소유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

- 다만, '단순 보조자·관리자·후원자 등'은 공동소유자가 될 수 없고,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을 시에만 공동소유자가 될 수 있다.

(3) 주최자는 아이디어 제안자, 주최자 및 기타 참여자 사이의 수익 배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아이디어 접수 전에 아이디어 제안자 및 기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주최자 등이 아이디어를 개선 및 발전시키는 정도에 따라 수익 배분의 비율이 다를 수 있음

- 다만, 아이디어 제안자의 원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참고사례) 「특허법」 제33조제2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sup>3)</sup>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한다고 규정

### 공모전 요강 예시

✓ 주최자의 책임하에 다수의 평가단이 응모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변경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제안자, 주최자 및 평가단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 소유 등 소유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아이디어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순이익(또는 매출액의 OO%)을 주최자, 제안자, 평가단이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

- 주최·주관기관 : OO%, 아이디어 제안자 : OO%, 평가단 : OO%

다만, 아이디어 제안자의 원래 아이디어 및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주최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응모된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 획득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공지 내용 예시

✓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됩니다.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공공의 소유가 되어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아이

3)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며, 단순 보조자·관리자·후원자 등은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없음 (대법원 2009다75178 판결)

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12개월, 디자인 : 6개월

### 3. 응모 아이디어의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 (1) 주최자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응모된 아이디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보안장치 · 보안규정 마련 및 비밀유지약정 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인 경우에 아이디어 제안자의 동의<sup>4)</sup>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 공모전 요강 예시

✓ 주최자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응모된 아이디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보안장치 · 보안규정 마련 및 비밀유지약정 체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의 경우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 (2) 주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 ·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4) 공모전 응모 시 '참가신청서', 수상 아이디어 결정 이후 '개별 협상' 등을 통해 제안자의 동의 획득

② 응모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 공모전 요강 예시

✓ 주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아이디어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3)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를 응모한 날부터 공모전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하여 응모를 철회하거나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주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태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 공모전 요강 예시

✓ 아이디어 제안자는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주최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는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경우 주최자는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한다

✓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를 응모한 날부터 공모전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하여 응모를 철회하거나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주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태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4) 주최자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모전 수상 결과에 대한 소송 등 분쟁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

\*\* 주최자의 책임하에 다수가 참여하여 응모된 아이디어를 개선·발전시키는 공모전인 경우에는 아이디어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폐기 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

#### 공모전 요강 예시

√ 주최자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1)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을 갖는다.

(2) 주최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최자는 수상 아이디어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및/또는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다.

- 다만, 주최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참고사례) 「발명진흥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업의 직무



발명 승계여부 통지기간을 종업원의 직무발명 신고일로부터 4개월로 규정

\*\* (참고사례) 「Philips Innovation Fellows Competition」 사례 : 주최자에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등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등을 대상으로 한 제3자의 선의의 계약 제안과 관련하여 주최자에 그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

### 공모전 요강 예시

- √ (예시 1)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을 갖고 주최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최자는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주최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예시 2)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을 갖고 주최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최자는 수상 아이디어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다.
- √ (예시 3)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을 갖고 주최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최자는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최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모전 요강 부적절 사례

- √ 주최/주관/후원기관은 수상작(선정작)을 추가계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 주최자는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가 주최자에게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가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가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참고사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공유자는 타인의 공유지분 매각 시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공유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규정

### 공모전 요강 예시

✓ 주최자는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가 주최자에게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가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주최자의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주최자와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주최자와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최자와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를 합리적인 대가로 정한다.

### 공모전 요강 예시

✓ 주최자의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주최자와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주최자와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최자와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를 합리적인 대가로 정한다.

### 공모전 요강 부적절 사례

✓ 수상작(선정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있다.

- ✓ 입상작(당선작)에 대한 모든 권한(권리)은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있다.
- ✓ 입상작(당선작)에 대한 모든 권한(권리)은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양도한다.
- ✓ 수상작(당선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주관/후원기관에 귀속된다.

## 5.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의 불사용 서약

주최자는 공모전을 통해 응모된 아이디어 중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사용 서약’을 해야 한다. 다만,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어 제안자와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 6.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 (1)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주최자와 아이디어 제안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자와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공모전 요강 예시

- ✓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주최자와 아이디어 제안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자와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주최자와 아이디어 제안자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주최자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 중재기관 ·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공모전 요강 예시

✓ 주최자와 아이디어 제안자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주최자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중재기관·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3) 주최자가 응모된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탈취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신고하여<sup>5)</sup> 구제받을 수 있다.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1.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주최자는 공모전 요강 등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모전 요강 예시

✓ 주최자는 본 공모전 요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5)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https://www.ippolice.go.kr>) 신고 및 상담전화(☎1666-6464)

## IV. 아이디어 제안자의 준수사항

- (1) 아이디어 제안자는 제3자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응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응모한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공모전 요강 예시

✓ 아이디어 제안자는 제3자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모전에 응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2) 수상 이후라도 해당 아이디어가 표절, 도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다.

## 공모전 요강 예시

- √ (예시 1) 수상 이후라도 아이디어가 표절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귀책사유는 제출자에게 있음)한다.
- √ (예시 2) 제안내용이 타 공모전 수상작 혹은 표절로 판명된 경우 입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조치하며, 지식재산권 등 관련 분쟁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 √ (예시 3) 응모된 아이디어의 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라도 발견 시 포상금은 환수 조치한다.
- √ (예시 4) 응모된 아이디어의 내용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 이후 발견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한다.
  - 표절, 도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 특정 개인 등의 수익사업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등
- √ (예시 5)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 공고문,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중대한 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